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521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5213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8가단137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운, 담당변호사 김혁빈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길웅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1. 25.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8가단137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8. 2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 10. 1. 접수 제93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갑 제1, 3 내지 7호증”을 “갑 제1, 3 내지 7, 27호증”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쪽 나)항 위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5, 6쪽의 나) 내지 라)항을 다) 내지 마)항으로 각 고친다.

『나) D의 배우자와 자형도 각각 소외 회사로 돈을 송금하고, 소외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도 D은 횡령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의 배우자와 자형이 소외 회사에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송해인, 판사 석동우

별지